

공지사항

'82年度 電子, 電氣業体 名簿製作 原稿提出 案内

本会에서는 電子, 電氣業体名簿를 製作하여 配布함으로써 業体 상호간의 편의제공, 有関機關과 本会에서 業体를 위한 推進事業에 기여코자 電子, 電氣業体名簿를 다음과 같이 製作코자 하오니 原稿를 期日內에 提出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電子, 電氣 1,200여 業体를 대상으로 製作하게 될 同名簿에 掲載할 廣告를 申請받고 있으니 다음을 참조하여 많은 申請바랍니다.

서울 中区 會賢洞 2街 10-1
韓國貿易會館 1101号
韓國電子工業振興會 會員管理課
電話 : 778~9565 / 6, 0913 / 8

〈참조양식〉

'82電子電氣業体名簿作成原稿

1. 基本体制

가. 冊의 仕樣

- 1) 冊名 : '82年度 電子, 電氣業体名簿
- 2) 判型 : 19.5cm × 26.8cm
- 3) 部數 및 面數 : 2,000部 300page 内外
- 4) 內容 : 業体別, 生産品目別, 地域別
- 5) 發刊日字 : 1982. 5

나. 原稿提出 및 廣告掲載申請

- 1) 原稿提出 : 1982. 3. 31까지
- 2) 廣告提出 : 1982. 4. 10까지

2. 名簿原稿 및 廣告作成要領

가. 名簿原稿作成

- 1) 한글 漢文을 혼용하되 住所와 代表者 姓名은 漢文으로 記入
- 2) 生産品名은 한글 漢文을 혼용기입

나. 廣告

분해필름이거나, 本会에서 原色分解 할 수 있는 Positive Slide Film을 提出하여야 함.

3. 名簿原稿 提出處 및 廣告 申請處

業体名 :

代表者

所在地(本)

(電話番号)

(工)

(")

(事)

(")

從業員

名(男, 女)

昨年度実績 : 總売上高 千원 内需 % 輸出 %

資本金 : 千원

{ 內資
外資 }

千원
千원

合作先

設立年月日 :

生産品目 :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運用에 關한 指針 및 輸入電氣用品에 對한 型式承認要領 改正

工振庁에서는 지난 2月 26日 工振庁告示 82-20号로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運用에 關한 指針 改正과 工振庁告示 82-19号로 輸入電氣用品에 對한 型式承認要領改正을 다음과 같이 告示하였다.

1. 改正事項 主要骨字

가. 電氣用品 安全管理法 運用에 關한 指針

1) 製造業 許可 工場檢査要員 強化 指定試驗機関과 合同工場檢査를 国立工業試驗院, 해당 地方工業試驗所와 合同工場 檢査로 改正(제 3 조)

2) 生産開始 報告期間 단축
생산개시후 20일 이내를 생산개시후 10일 이내로 改正(제 8 조)

3) 사후管理 等級制 폐지

區 分	現 行	改 正
等 級	A, B, C, D級	廢 止
事 后 管 理 措 置	再試驗(A, B級) 販賣禁止 取去 및 改善(C級) 承認取消(D級)	取 消
	改善命令(級數無關)	改善命令

(第22条, 23条, 24条, 25条)

4) 試驗 結果 措置基準 調整

區 分	現 行	改 正
重 缺 陷	特 性	特性外 品質에 미치는 구조包含
輕 缺 陷	構造, 表示事項	左 同

(第20条)

5) 一部品目の 施設基準強化

600V 비닐電線, 器具用 비닐코오드
(KS심사기준과 동일, 제 2 조에 關한, 별표 1)

6) 技術人力 確保의무화

全業체에 擴大, 全從業員의 1% 이상
(제 3 조 제 2 항 電氣用品工場 檢査 평가 기준: 별표 3)

7) 品質管理教育 基準強化

외부 교육실적 3年 1回 이상에서 1년 1回 이상으로 개정(제 3 조, 별표 3)

8) 工場 檢査 評價基準 調整

A, B, C, D級 評價를 ○, × 判定으로 改正(제 3 조 별표 3)

나) 輸入電氣用品에 對한 型式承認要領

1) 일부 AFTER SERVICE 장비 삭제

「電動器류 및 전동력 응용기계기구 중 회전자가 있는 것」中 의료용 물질 생성기를 수입할 경우 종전 PH 측정용 시약, PH 시험지, PH 측정기를 삭제

기타 자세한 것은 본회 品質管理課(778-0913/8)로 문의 바랍니다.

在外 韓國係 과학기술자 유치활동 계획 및 海外 연수 지원 계획안내

科技處에서 수행하던 在外 科學者 유치사업과 國費海外技術 研修事業을 82년부터 한국과학재단에서 추진케 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유치: 활용 예정일 3개월전
- 연수: 1차-82. 2. 20까지
2차-82. 5. 31까지
3차-82. 11. 30까지

• 在外 韓國係 과학자 및 技術者 유치 활용 계획

- 유치구분
 - (1) 영구유치: 2년이상
 - (2) 일시유치: 단기간 체제
- 대상분야
電子, 電氣, 컴퓨터 등
- 대상 과학기술자
박사학위 또는 그 이상 자격소지자
- 유치 활용기관
 - (1) 학계, 국·공립 研究기관
 - (2) 主要産業 技術 開發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
- 지원내용

(1) 영구유치

ㄱ)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에 대한 편도 예매

ㄴ) 이사비용 1,000弗

(2) 일시유치

본인에 대한 왕복여비

• 海外研修 事業 計劃

· 연수과정

- (1) 학위과정
- (2) 기술연구과정
- (3) post-Doc과정, 전문연구과정

· 대상자

정부 출연기관, 정부 투자기관, 민간기관

· 연구분야 및 연수과정

電子, 電氣, 컴퓨터 등

· 研修機關 선정: 자율적 추진을 원칙적으로 하고 필요시 선정

· 研修費用 지원: 여비, 체재비를 研修 機關에서 지원하는 경우 동액을 제한 부족액만 지급. 수업료 등은 자체부담

기타 자세한 것은 한국과학재단(965~6370, 6380, 0203)으로 문의 바랍니다.

품질기준미달 工產品의 발생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요령

工振庁에서는 지난 2月22日 工振庁 告示 제 82-18号로 품질기준미달 工產品의 發生業체에

대한 기술지도 요령을 다음과 같이 告示하였다.

공지사항

품질기준미달 공산품의 발생업체에 대한 기술지도요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工產品의 品質에 關係된 법률에 의거 실시한 시험 또는 검사결과 그 법률이 정하는 품질기준(이하“품질기준”이라 한다.)에 미달된 제품을 발생시키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 품질기준에 도달되도록 기술지도(이하“지도”라 한다)를 실시하여 공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도대상업체) 이 요령에 의한 지도대상업체는 품질기준미달품을 발생시킨 제조업체로 한다.

제 3 조 (지도업체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다음각호의 기관(이하“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대상업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 1 호의 서식에 의거 매년 1 월말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립공업시험원
2. 지방공업시험소
3.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4.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
5. 한국의류시험검사소
6.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7. 한국잡화포장시험검사소
8. 한국유류시험검사소
9. 한국기계연구소

제 4 조 (지도대상업체의 선정) 공업진흥청장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지도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선정기준
가. 공산품의 품질에 관계된 법률에 의한 각종검사 결과 품질기준미달율이 높은 업체

- 나. 소비자 고발이 많은 업체
- 다. 수출 클레임이 많은 업체

2. 제외대상

- 가. 품질기준미달 내용이 경미한 경우
- 나. 제 1 호의 품질기준미달 내용이나 소비자의 불만내용이 당해품목의 품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경우

제 5 조 (지도대상업체의 분류) ①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지도대상업체는 다음 각호로 분류한다.

1. 직접지도업체
2. 위탁지도업체

② 제 1 항 제 1 호의 직접지도업체는 품질기준미달 원인이 복합적이며 필요한 경우 지도기관 소속직원 이외의 전문가의 지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도가 필요한 업체로 한다.

③ 제 1 항 제 2 호의 위탁지도업체는 품질기준미달 원인이 부분적이고 명료하여 간단한 지도만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업체로 한다.

④ 공업진흥청장은 별지 제 2 호의 서식에 의거 제 1 항 제 2 호의 위탁지도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도를 지도기관에 위탁한다.

제 6 조 (지도대상업체의 통보) ① 공업진흥청장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도업체에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거 지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도기관은 지도를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 3 호 서식에 준하여 지도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업체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기술지도신청서를 공업진흥청장 또는 지도기관의장(이하“지도기관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④ 지도기관의장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지도대상업체 또는 지도위원의 변경 등 지도계획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공지사항

제 7 조(지도위원) 지도기관의 장은 지도업체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도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도기관의 소속직원
2. 대학교수
3. 기타 사제전문가

제 8 조(지도의 실시) ① 현장지도 내용은 지도 대상업체의 품질기준미달 공산품의 기준미달 원인을 제거하여 그 기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다.

② 지도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일수는 9 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기준미달 원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지도일지의 비치) 지도대상업체는 별지 제 5 호의 서식에 의한 지도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 10 조(지도보고) ① 지도위원은 매회 지도 종료후 7 일 이내에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현장지도 중간보고서를 2 부 작성하여, 1 부는 지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 부는 지도대상

업체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지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도위원은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한 기술지도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기술지도 종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도품목에 대한 공인기관(제 3 조에 열거한 지도기관으로 한다)의 제품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 5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지도 기관의 장은 위탁지도대상업체에 대한 지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 8 호의 서식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공포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지도는 이 요령에 따라 지도하는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 호 서식)

품 목 별 기 준 미 달 내 용 보 고 서

19 까지 당 기관이 실시한 각종 공산품 시험(검사)결과 품질기준미달이 발생했던 업체별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9

보고기간()

품 목	검 사 종 류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불 량 내 용			비 고(불량 원인설명)
						항 목	기 준	시 험 결 과	

공지사항

(별지 제 2 호 서식)

품질기준미달 공산품의 발생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위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비 고

* 위 업체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위탁하오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 업 진 흥 청 장

(별지 제 3 호 서식)

품질기준미달 공산품발생부분에 대한 기술지도 계획통보서

귀업체가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해 당청산하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결과 공산품 품질관계법 규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기, 다음과 같이 당청고시 제82-18호에 의한 기술지도를 시행코자 하니, 동봉하는 기술지도신청서에 의거 19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 업 진 흥 청 장

다 음

1. 업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지 도 계 획

품 목 명	소관시험 검사기관	품질개선이 필요한부분	지 도 위 원		지 도 시 기						비 고	
			성 명	소 속	1 회		2 회		3 회			
					자	지	자	지	자	지		

공지사항

(별지 제 4 호 서식)

기 술 지 도 신 청 서

일자로 보내주신 기술지도계획통보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198

신청인 :

대 표 : (인)

당 업체에의 기술지도계획에 대한 의견

1. 수정 또는 보완 필요성 여부

() 있다

() 없다

* 있다면 그 내용

2. 금년도 지도계획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 희망한다

() 희망하지 않는다

* 희망한다면 그 사유

(별지 제 5 호 서식)

기 술 지 도 일 지

지도요원	지도계획		지도실시	
	일시	지도사항	일시	지도내용

공지사항

(별지 제 6 호 서식)

기술지도 실시 중간 보고

다음과 같이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기 중간보고 합니다.

19

기술지도요원 : (인)

업체대표자 : (인)

전화 :

1. 지도 업체 명 :
2. 지도 대상 품목 :
3. 지도 내용 :

지도일자	지도내용	비고

* 지도내용은 6 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기술

(별지 제 7 호 서식)

기술지도 종합 보고서

다음과 같이 기술지도를 완료하였기 종합보고 합니다.

198

기술지도위원

소속	성명	인
1)		
2)		
3)		

공지사항

1. 개요

가. 기술지도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지도 품목			

나. 기술지도위원 및 지도일정

기술지도위원			지도일정	비고
소속	직위	성명		

2. 현장기술 지도사항

현황 및 문제점	세부기술 지도내용	개선사항 및 효과	기타

3.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1) 종합의견

(2) 건의사항

4. 기술지도후의 제품시험성적서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위탁지도사업결과보고서

○지도기관 : ()

지도품목	업체명	지도위원	지도일정			지도내용	지도후 제품시험 검사합격 여부	비고
			자	지	지도 일수 누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品質管理課 (778~0913 / 8)로 문의 바랍니다.

사회정화 소재 노래가사 모집

사회정화위원회와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밝고 바른 우리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부를 노래가사를 다음과 같이 현상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1. 목적

- 가. 사회정화소재 노래가사를 모집 보급하여 밝고 바른사회 기풍조성에 기여.
- 나. 온국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된 노래를 보급하여 국민총화에 일체감 조성에 기여

2. 주관 : 한국방송협회(전회원사)

3. 지원 : 사회정화위원회

4. 기관 : 1982. 2. 15-12. 31. 까지

5. 추진사항(단계별)

- 가. 노래가사현상공모(2. 15- 3. 18), 시상(3. 30)
- 나. 작곡위촉(4. 10), 합평회(4. 30)
- 다. 악보발간·배포(5. 10)
- 라. 음반 및 테이프 제작 배포(5. 20)
- 마. 방송을 통한 캠페인 전개(5. 20-12. 31)
- 바. 합창경연대회 개최(10월 중순...추후 검토)

6. 제 1 단계 "노래가사 현상 공모"

- 가. 공모기간 : 1982. 2. 15- 3. 18.
- 나. 출품자격 : 제한없음(누구나 참여가능)
- 다. 노래가사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1) 밝고 바른 우리사회 건설: 정직, 근면, 성실한 사람이 우대 받고,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뜻이 포함되는 내용.

(예)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우대 받는 사회, 바르고 잘살기, 인간답게 잘살기, 내재된

부패심리 추방, 청탁배격, 밝고 맑은 마음.

(2) 국민의 질서의식 고취: 국민의 질서의식 및 공중도덕심을 함양하며,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양하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뜻이 내포된 내용.

(예) 3대 부정적(부패, 무질서, 인플레이)심리 추방, 생활질서, 공중질서, 거리 및 교통질서, 상거래질서, 공중도덕, 주인의식, 책임의식

(3) 창조정신 고취를 통한 사회발전 권위주의,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어 개인 집단사회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뜻이 포함되는 내용

(예) 진취적인 개혁정신, 참신한 발상력, 미래 지향적인 노력, 패배주의적 운명론 탈피,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

* 유의사항

- 노래 하나에 너무 많은 뜻이 담기지 않도록 단순화하고,
- 부드럽고, 쉽게 그리고 박력과 정감이 흐르는 노래말을 지어 보내주고,
- 구호조나 어려운 낱말을 피하고 생활 감정 묘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라. 시상내용

- 당선작 1 편: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우수작 2 편: 상금 각 60만원 및 상장
- 입선작 5 편: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
- 마. 출품마감 : '82년 3월 18일

공지사항

바. 입상자 발표 및 방법 : '82년 3월 25일
방송뉴스시간, 각 신문 문학란 개별통지

사. 작품접수(우송) :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76(한국방송협회)

不良工產品 申告所 設置運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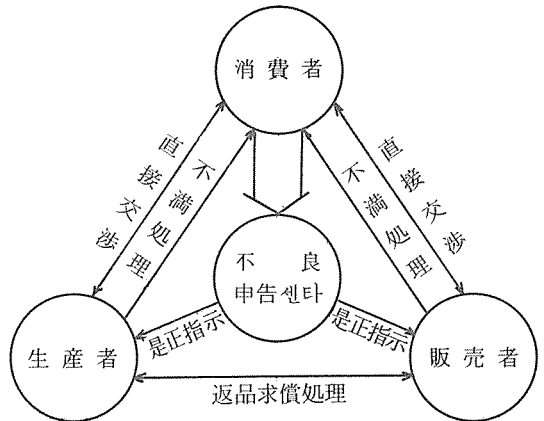
消費者가 일반시중에서 구입한 生活用品 中 不良工產品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명량한 거래 질서 확립, 製造業체의 品質保證体制 추진을 목적으로 各市, 郡(區)庁 민원실과 民間消費者 団体の 各市, 道 支部에 289個所의 不良工產品 申告所를 設置 運營하고 있으며, 申告자가 전화나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81년의 不良工產品 申告 中 家電製品 申告件 數는 4,516건으로 申告者 不實申告가 559件이 며, 현재 처리중인 것은 58件으로 나머지는 完 全처리 되었다.

同措置와 관련하여 本會에서도 消費者 不滿 申告所를 다음과 같이 설치 運營한다.

1. 申告所名 : 電子電氣製品 消費者 不滿 申告 所

2. 運用場所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品質管理課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貿易會館 1001号)
전화 : 778-0914
不良工產品申告센터運營



消費者保護 行政 体系

